

#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9월 16일  
의회 운영 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9월 6일, 장규권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6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2년 9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장규권 의원)

- 가. 개정이유
  - 전부개정 「지방자치법」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반영하고, 의원의 겸직신고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상위법 근거 조문을 목적 조항에 반영하고 약칭된 용어를 정비함.  
(안 제1조, 제2조)
  -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의회 인터넷 누리집(홈페이지)에 공개 하도록 함.(안 제13조제4항 신설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하영

나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」(2022. 1. 13. 시행) 제43조(겸직 등 금지) 및 제46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에 따라 자치구의회의 독립된 기관으로의 안정적 운영과 이에 상응하는 의회 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,
- 상위법 인용 조문 반영 및 약칭된 용어를 정비하고(안 제1조, 제2조),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금천구의회 인터넷 누리집(홈페이지)을 통해 공개하는 강행규정(안 제13조제4항)을 신설함으로써 의원의 책임 및 윤리의식 강화는 물론,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, 향후 실질적 의미의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